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진정 제기 시효 연장〉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61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미화 · 박지혜 · 황운하 · 복기왕 · 이수진 · 이재강
박지원 · 백승아 · 이인영 · 윤종오 · 정준호 · 윤종균
이성윤 · 정진욱 · 강준현 · 이기현 · 오세희 · 김성환
최보윤 · 김 윤 · 조계원 · 이병진 · 김한규 · 김예지
정혜영 · 박정현 · 채현일 의원(27인)

2. 제 안 일 : 2024. 7. 18.

3. 회 부 일 : 2024. 7. 19.

※ 의안번호 : 196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결정한 후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군 인권사건 또한 현역병인 경우 대응이 어렵고 제대 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진정 제기 시효 1

년이 진정 사건의 권리구제에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현행법상 엄격한 진정 요건으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진정의 각하 요건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개정하고(안 제32조제1항제4호) 동법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의7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진정의 각하 요건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에 맞추어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동일하게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u>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u>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u>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u> ----- ----- ----- ----- -----.
5. ~ 10. (생략)	5.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의7(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등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u>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u> 지난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제50조의7(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① ----- ----- <u>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u> ----- ----- -----

현 행	개 정 안
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는 제32조 제1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u>1년 이상</u>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 ----- ----- ----- -----2년 이상-----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4호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하되,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¹⁾

1) ‘각하’는 법률상 신청이나 청구가 그것이 갖추어야 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임.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진정 사건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진정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각하 사유는 10가지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제50조의7제1항²⁾은 이에 대한 특례로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는 각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되,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현황을 살펴보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하여 각하된 건수는 총 880건으로 같은 기간 총 각하 건수 29,446건의 3.0% 수준임.

[표-2] 진정 각하 사유별 건수(2019년 ~ 2024년 6월)

연도	제32조제1항										제32조제3항	합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2019	1,334	51	115	187	236	6	330	3,201	36	5	11	5,512
2020	1,124	55	122	141	195	8	245	3,298	28	1	15	5,232
2021	954	57	111	131	205	8	351	3,245	27	3	21	5,113
2022	642	31	103	158	205	10	352	3,753	13	1	17	5,285
2023	1,175	67	124	186	346	9	309	3,534	16	2	30	5,798
2024	457	11	59	77	136	2	145	1,581	21	-	17	2,506
계	5,686	272	634	880	1,323	43	1,732	18,612	141	12	111	29,446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2) 2022. 1. 4. 신설되어 2022. 7. 1. 시행되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진정이 제기되어야만 유효하도록 한 현행 조항(「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대하여, 인권침해의 속성상 진정 가능 기한을 너무 단기로 두는 것은 실효적인 인권 구제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진정 가능 기한을 적절한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³⁾

개정안과 같이 진정의 각하 요건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군인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4호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사건의 경우 증거 확보와 사실 증명이 곤란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건심리 자체를 거절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사건에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정 각하에 대한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진정 처리의 효율성 측면과 국민의 권리

3)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의 적시성, 적절성, 효과성 확보 1: 조사·구제 혁신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 p.109

구제 확대 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
